

# 공유재산 관리계획(취득) 승인안

## 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9. 11. 25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12. 18
- 라. 상정일자 : 제91회 서구의회(정기회 회기중)  
제6차 사회도시위원회(1999. 12. 22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교통과장 김 병 호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
-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### 나. 주요골자

-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함으로
-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~3개소 (100평 이상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,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 화 순)
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였음.
-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의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 ~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,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.
- 그러나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과 적정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

#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2월  
제 출 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## □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 토록되어 있으므로
-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주요내용

-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함으로
-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~3개소(100평 이상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,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.

## □ 취득승인 요청

-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서,
-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~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500,000천원이 되겠습니다.

## □ 취득방법

-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.

## □ 참고사항

-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 내역

##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

명 칭	소재지	면 적	소요예산	취득시기	비 고
공 영  노외주차장	서구 관내	100평 이상	500,000천원	2000년중	

※매입당시 여건(매입금액,면적 등)을 고려하여 개소수(1~3개소)를 결정하겠습니다.